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994

발의연월일: 2021. 3. 22.

발 의 자:조오섭·송갑석·윤영덕

양향자 • 이형석 • 이병훈

박영순 · 인재근 · 안민석

민형배 • 이용빈 • 문진석

의원(12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기반시설의 관리 시책의 수립에 있어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을 위하여 기반시설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고,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기반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실제 기반시설 관리를 수행하는 관리주체의 구체적인 1년 단위 실행계획 수립 의무가 없어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의 이행점검과 실행력 확보를 위해서는 매년 관리주체의 소관 시설에 대한관리계획 수립과 실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관리주체는 매년 소관 기반시설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신설하고, 정부지원의 원칙에 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실행계획이 수립된 시설에 대해 유지관리비용 및 성능개선비용을 지원하도

록 함으로써, 대부분의 기반시설에 대해 실제 관리를 담당하는 관리주체의 책임성을 높이고, 실행계획이 수립된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있도록 하여 국민 안전 확보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관리주체는 관리계획에 따라 소관 기반시설에 대한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9조의2).
-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리계획뿐 아니라 실행계획이 수립된 기반시설에 대하여 유지관리비용 및 성능개선비용을 지원하도록 추가함(안 제20조제2항).
- 다.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유지관리비용을 지원할 때 관리계획뿐 아니라 실행계획에 반영된 연간 유지관리비용을 기준으로 지원하도록 추가함(안 제20조제4항).

법률 제 호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라목 중 "제2조제7호"를 "제2조제8호"로 한다.

제2장에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9조의2(기반시설 관리실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관리주체는 관리계획에 따라 소관 기반시설에 대한 관리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관리주체는 실행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2항에 따라 실행계획을 제출받은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실행계획을 확인한 후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실행계획을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실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과 부합하는 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⑤ 관리주체는 수립된 실행계획에 따라 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관리계획"을 "관리계획 및 실행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9조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을 "관리계획 및 실행계획"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6. "관리주체"란 관계 법령에 | 6. -----따라 기반시설의 관리책임을 지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 다. 가. ~ 다. (현행과 같음) 가. ~ 다. (생 략) 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민자사업자"라 한다) 마. (생 략) 마.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조의2(기반시설 관리실행계획 의 수립·시행) ① 관리주체는 관리계획에 따라 소관 기반시 설에 대한 관리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실행계획을 수 립·변경한 경우 관리감독기관 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

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실행계획을 제출받은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실행계획을 확인한 후 이를 국 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실행계획을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리감독기관의 장은실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과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수 있다. 이 경우 수정 또는보완을 요구받은 관리주체는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한다.

- ⑤ 관리주체는 수립된 실행계 획에 따라 기반시설을 유지관 리하여야 한다.
- ⑥ 그 밖에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정부 지원의 원칙) ① (생략)

제20조(정부 지원의 원칙) ① (현 행과 같음)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 리계획이 수립된 기반시설에 한정하여 유지관리비용 및 성 능개선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유 지관리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 는 제9조제1항에 따른 관리계 획에 반영된 연간 유지관리비 용(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과·징 수한 기반시설 사용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차 감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준연도의 유지관리비용 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50 을 한도로 한다.

⑤ • ⑥ (생 략)

② <u>七</u>
리계획 및 실행계획
③ (현행과 같음)
4
관리계획 및 실행계획
· ⑤·⑥ (현행과 같음)